

## 금융위 부위원장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

-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「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」 개최
  - 만기연장 차주(지원 대출잔액의 92%)는 3년('25.9월까지) 계속 이용 가능
  - 상환유예 차주(지원액의 6%(원금유예), 2%(이자유예))는 상환계획서 98% 작성,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상환('28.9월까지) 가능
- '22.9월 지원방안에 따라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차주는 지속적인 지원 이용 가능

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.8.(목)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협회 등과 함께 「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, 그간의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였다.

- 일시·장소 : '23.6.8.(목) 16:3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참석자
  - (금융위)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안정지원단 정책총괄과장
  - (금감원) 부원장보
  - (금융권) 은행연합회, 시중은행 부행장(신한·하나·우리·기업 등), 농협중앙회
- 논의 안건 :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등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·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. '20.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, 지금은 '22.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「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」(금융권 자율협약, 이하 '연착륙 지원방안')에 따라 운영 중이다.

‘22.9.27일 발표된 ‘연착륙 지원방안’에 따라,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(지원 대출잔액의 92%)은 3년(‘25.9월까지), 상환유예[지원액의 6%(원금유예), 2%(이자유예)]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‘28.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.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‘23.3월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,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하여 거치기간(1년) 및 분할상환(최대 60개월)을 이용하게 된다.

‘23.3월말(잠정) 기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.

‘22.9월 대비 대출잔액 약 15조원, 차주 약 4.6만명이 감소하였다. ‘22.9월말 기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, 약 43만명이었으나, ‘23.3월말 기준으로 약 85조원, 약 39만명으로 감소하였다. 이는 자금여력, 업황 개선,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,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,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증임을 보여준다.

(단위 : 조원, 만명)

구 분	지원대상 여신			차주수		
	‘22.9월말 기준(A)	‘23.3월말 기준(B)	증감분(A-B)	‘22.9월말 기준(A)	‘23.3월말 기준(B)	증감분(A-B)
① 만기연장	90.6	78.8	11.9	41.3	37.5	3.9
② 상환유예 <sup>1)</sup>	9.4	6.5	2.9	2.4	1.6	0.7
① 원금상환유예 <sup>2)</sup>	7.4	5.2	2.2	2.2	1.5	0.65
② 이자상환유예 <sup>3)</sup>	2.1	1.4	0.7	0.19	0.11	0.08
합계	100.1조원	85.3조원	14.7조원	43.4만명	38.8만명	4.6만명

- 1) 상환유예 :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원칙적으로는 ‘23.3월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, 재약정 만기가 ‘23.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
- 2) 원금상환유예 :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
- 3) 이자상환유예 :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유예

지원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①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, 감소한 대출잔액의 87.4%(10.4조원/11.9조원)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. 나머지 13%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.2조원,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.

②-①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, 감소한 대출잔액의 36.4%(0.8조원/2.2조원)는 상환완료되었으며, 54.1%(1.2조원/2.2조원)는 업황개선,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되어 상환을 개시하였다.

②-② **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**의 경우, 감소한 대출잔액의 35.4%(0.25조원/0.7조원)는 **상환완료**되었으며, 51.5%(0.36조원/0.7조원)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**상환**을 개시하였다. 다만, 일부 차주의 경우 **연체·폐업**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‘23.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4,637명으로, 이 중 14,350명(98%)이 **상환계획서**를 작성완료하였다. 구체적으로는 **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**의 98.3%(13,873명/14,119명), **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**의 84.8%(571명/673명)가 **상환계획서** 작성을 완료하였다.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현황을 평가해 보면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액 중 92%(78.8조원/85.3조원)는 **만기연장 이용차주**로 원칙적으로 3년 지원되어 ‘25.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.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**정상적으로 납부** 중으로,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**재연장(Roll-over)**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액 중 **상환유예 지원액**(6.5조원/85.3조원)은 8% 수준으로, **상환유예**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**거치기간**과 최대 60개월(‘28.9월까지)의 **분할상환**을 이용할 수 있다.

**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**는 전체 지원액의 6%(5.2조원/85.3조원) 수준으로, 차주수는 약 1.5만명이다.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**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%(1.4조원/85.3조원) 수준으로, 차주수는 약 1,100명이다.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,498조원(중소기업대출 약 830.5조원,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약 667.5조원)의 0.09% 수준(1.4조원/1,498.0조원)으로 파악되었다.(한국은행 ‘22년말 기준)

**상환계획서** 작성은 ①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, ②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**리스크**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다.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**상환계획서**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‘28.9월까지 **상환유예 이용차주**와 협의하여 **상환계획**을 수정·보완할 것을 밝혔다.

김 부위원장은 「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또한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,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·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「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」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.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(컨설팅)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권주성 (02-2100-2591)
		담당자	사무관	유승은 (02-2100-1662)
			사무관	최형우 (02-2100-1661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창운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변재은 (02-3145-8001)
		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	책임자	본부장
담당자	부장		박영상 (02-3705-5704)	

